



한국저작권위원회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국가연구개발사업 소프트웨어분야 연구성과 등록 협조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3조(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나.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연구성과 관리
· 유통 전담기관의 지정 등)

3. 위 관련, 연구개발기관(주관연구기관 등)은 연구성과를 전담기관에 등록해야 하며,
본 위원회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소프트웨어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으로서
각각 정보시스템(저작권등록(www.cros.or.kr), SW자산뱅크(www.swbank.kr))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4. 이에, 소프트웨어 연구성과 등록 절차를 붙임자료로 안내해드리니, 귀 기관 수행과
제의 소프트웨어 성과물이 등록될 수 있도록 적극 안내를 요청드립니다.

- 붙임 1. 국가연구개발사업 소프트웨어 저작권분야 연구성과 등록안내서 1부.
2. 국가연구개발사업 소프트웨어 기술상세정보분야 연구성과 등록안내서 1부.
3. 국가연구개발사업 소프트웨어 저작권분야 연구성과 등록 리플릿 1부. 끝.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수신자 부경대학교총장(산학협력단장), 경북대학교총장(산학협력단장), 서울시립대학교총장(산학협력단장), 안동대학교산학협력단장, 서울과학기술대학교산학협력단장, 영남대학교산학협력단장, 전남대학교총장(산학협력단장), 국립공주대학교총장(산학협력단장), 국립한국교통대학교총장(산학협력단장), 서울대학교총장, 중앙대학교총장, 고려대학교총장, 성균관대학교총장, 경희대학교총장, 숭실대학교총장, 연세대학교총장, 부산대학교총장, 한양대학교총장, 건국대학교총장, 세종대학교총장, 인하대학교총장, 광운대학교총장, 아주대학교총장, 포항공과대학교총장, 충북대학교총장, 국민대학교총장, 충남대학교총장, 조선대학교총장, 동의대학교총장, 이화여자대학교총장, 순천대학교총장, 동국대학교총장, 서강대학교총장, 단국대학교총장, 계명대학교총장, 가천대학교총장, 순천향대학교총장, 전북대학교총장, 강릉원주대학교총장, 강원대학교총장, 한양대학교총장, 한국외국어대학교총장, 경기대학교총장, 서울여자대학교총장, 동명대학교총장, 배재대학교총장, 경상국립대학교총장, 한국항공대학교총장, 목포대학교총장, 창원대학교총장, 원광대학교총장, 명지대학교총장, 홍익대학교총장, 제주대학교총장, 호서대학교총장, 한성대학교총장, 동아대학교총장, 숙명여자대학교총장, 동신

/ 공개